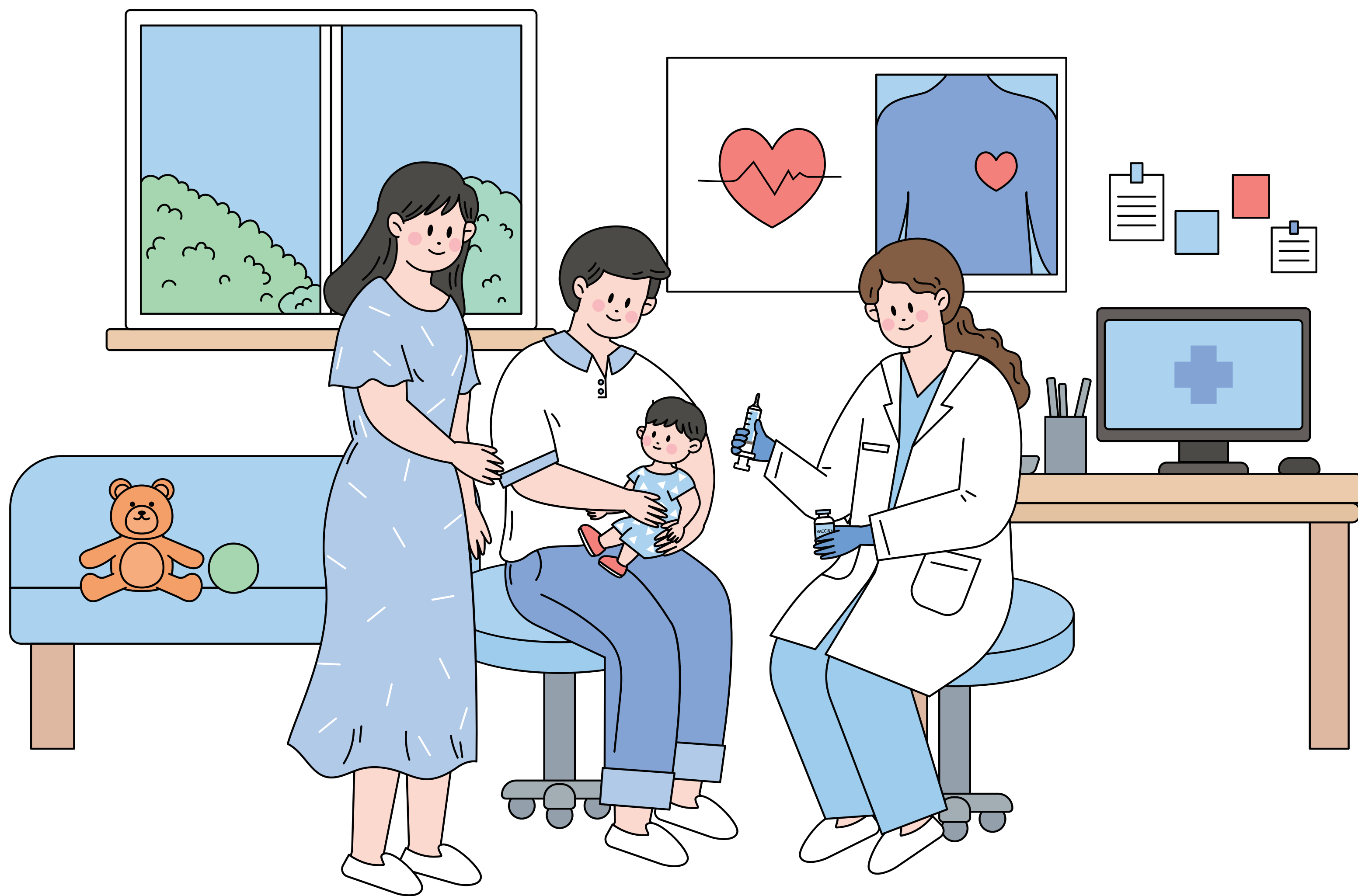


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



이 글은 「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」 지침을 요약하여 작성됨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들어가며

- 어린이 건강은 비만, 당뇨, 고혈압과 같은 성인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로 소아청소년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는 증가하는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증가하고 있음
- 그러나 까다로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어 중증 소아를 위한 어린이 진료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
-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, 아동 인구 감소 및 투자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이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사후에 보상하는 ‘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’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음

사업 개요

사업목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아동의료체계 유지·강화

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(3년간)

사업대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*(총 9개소)

* 서울대학교병원, 삼성서울병원,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, 칠곡경북대학교병원, 강원대학교병원, 충남대학교병원, 전남대학교병원, 전북대학교병원, 양산부산대학교병원

지원금 결정 방법



자료제출

매년 3월(사립학교 소속 의료기관 5월)에 의료기관별 회계·원가자료 및 성과보고서 제출

기준 지원금 산정

제출된 회계·원가자료를 토대로 활동기준원가(Activity Based Costing, ABC) 분석을 통해 기준지원금을 산정

성과평가

의료기관 현황자료 및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기관별 의료성과(50점), 사업성과(50점)를 평가

※ 전년대비 성과가 향상되거나, 소아청소년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 부여

최종 지원금 결정

설정된 기준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/중/하로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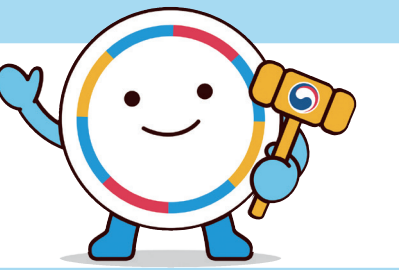
성과평가 항목

구분	평가 항목	배점	평가 방법	
의료 성과 (50점)	인프라	1-1 소아 전문의 확보 수준	20	정량 (50)
		1-2 간호사 확보 수준	15	
		1-3 기타 소아전담 의료인력 확보 수준	5	
	중증진료	1-4 소아중증환자 비율	5	
	진료결과	1-5 소아진료 관련 질 평가 결과	5	
사업성과 (50점)	기능강화	2-1 「센터 중점 사업」 추진 성과	20	정성 (50)
		2-2 「권역 중증 어린이 진료 거버넌스 구축」 추진 성과	20	
	운영효율화	2-3 「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」 목표 달성 추진 성과	10	
가점 (최대 10점)		3-1 전년 대비 의료성과의 합산 점수가 향상된 센터 (서울 내 센터 2점, 서울 외 센터 7점)	2, 7	정량 (10)
		3-2 소아청소년 대상 시범사업 참여 여부 * 중증소아 재택의료,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,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사업 사업당 1점의 가점 부여	3	

나가며



- 2023년부터 3년간 실시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단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별 중증 어린이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또한 이 사업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회계·원가분석을 통한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

공익신고



2020.11.20.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(284개 → 467개) 대폭 확대

공익신고자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

보호

- ◆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불이익조치 금지, 책임감면

보상

- ◆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
- ◆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
- ◆ 구조금(치료비, 이사비, 소송비용 등)

상담

- ◆ 국번없이 **1398** 또는 **110**

신고

- ◆ 인터넷 •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
- ◆ 방문·우편 •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
-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)

※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